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1295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피 고 1.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

담당변호사 권원현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기술보증기금과 소외 주식회사 A 사이에 2018. 4.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소외 주식회사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4. 16. 접수 제35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기술보증기금과 소외 주식회사 A 사이에 2019. 4.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소외 주식회사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4. 12. 접수 제333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외 주식회사 A 사이에 2019. 4.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라.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소외 주식회사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4. 24. 접수 제36766호, 제3676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7.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등이 있는 때에는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나. 2018. 3.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B 등의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0508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A는 2018. 4. 16. 피고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기술보증기금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4. 16. 접수 제359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9. 4. 12. 피고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기술보증기금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4. 12. 접수 제333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A는 2019. 4. 24.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정부등기소 2019. 4. 24. 접수 제36766호, 제3676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각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설정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등 합계 2,048,355,260원이고, 소극재산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209,286,741원,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547,440,000원,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등 적어도 합계 2,906,726,741원이 있었다.

바. 원고는 2020. 4. 29.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에게 130,217,33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A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35177)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3.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의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A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 설정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들에게 A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A에게,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제3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2019. 2. 26.까지에서 2020. 2. 25.까지로 연장해주었고, 이는 사전구상권의 포기 또는 면제에 해당하며,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5. 15.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건물에 화재가 나 멸실되고 A가 새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연장한 것은 사전구상금채권을 즉각 실행할 것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더 나아가 사전구상금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존 근저당권은 건물이 멸실함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고, A의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근저당권과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공동채권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별지

목 록

1. 경기도 양주시 공장용지 991.3㎡

2. 경기도 양주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양주시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지붕 2층 공장(기타공장)

1층 783.43㎡

2층 783.43㎡

- 끝 -